

Human Information
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<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>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12)





제4조(정부의 책무)
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산업안전·보건정책의 수립·집행·조정 및 통제
 2.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 3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(防護裝置)·보호구(保護具)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
 4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·감독
 5.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·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 6. 안전·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
 7. 안전·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 8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 9. 안전·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
 10.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-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

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차 개정('90. 1. 13)시 신설

신설사유

정부의 책무가 제7조(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) 및 제8조(연구개발의 추진 등)에서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 구현이 미흡

–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부 업무의 한계가 모호한 것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재해예방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



참고사항

제7조(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) 정부는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·보건의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구개발의 추진등)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신설내용
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·시행·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
2.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

에 관한 사항

3. 안전·보건에 관한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
 4.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·보건상의 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 5.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홍보·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 6. 안전·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 8. 안전·보건관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 9. 기타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
- ②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기타 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차 개정('96. 12. 31)

개정사유

그간 정부의 산업보건정책이 직업병 등 건강장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차원의 건강유지·증진을 위한 조치와 시책이 미흡한 실정

– 이에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유지·증진을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교육·상담, 체육활동 편의제공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『근로자 종합 건강증진 실천운동(THP)』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함



개정내용

제1항제9호 :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애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→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
제9차 개정('99. 2. 8)

개정사유

기존의 인적·물적 등 개별 유해·위험요소별 관리 위주에서 안전절차 및 설비관리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이라는 판단 하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필요성을 홍보
- 노·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사적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정책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

개정내용

제1항 제4호의2 : 신설
4의2.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
제21차 개정('07. 7. 27)

개정사유

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

개정내용

제1항 : 각호 → 각 호
- 제3호 : 안전·보건에 관한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→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

제23차 개정('08. 12. 31)

개정사유

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(법명 개정 : 한국산업안전공단법 →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)

개정내용

제2항 : 한국산업안전공단 →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☞